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026. 4. 13. ~ 4. 17.(5일간)

<2026. 4. 14.(화) 10:00 조례특위 제1차 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일곤

목 차

연 번	의안 번호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부서)	페이지
1	9-791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1
2	9-777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기획예산과)	2
3	9-778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4	9-779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세정과)	4
5	9-780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회계과)	6
6	9-781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자치행정과)	7
7	9-782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8	9-783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오산시장 (토지정보과)	9
9	9-784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장 (문화예술과)	10
10	9-78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도시정책과)	12
11	9-786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안전정책과)	14
12	9-787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중앙도서관)	17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91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4월 6일

발의의원 : 전도현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조미선 의원

□ 제안이유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비용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2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변경 (안 제23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됨.
- 안 제22조의2에서 “비용납부자에 대한 설치의무 면제”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및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무상사용 등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안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토지가액의 산출 기준을 정비한 것은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77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제안이유

- 2026. 1. 1. 字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국이 신설됨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규 구성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자 함.

주요골자

-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신규 추가 (안 제4조)
 - 기획재정국장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6. 1. 1. 字 오산시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78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용어 통일을 위하여 3개 조례를 일괄 개정, 입법 경제성과 행정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제2조)
-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제16조)
-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제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업등기법」(법률 제8582호, 2008. 1. 1. 시행)이 제정 시행되면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등기부'라는 용어를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용어로 정비함에 따라¹⁾, 우리시 자치법규 중 법령과 불부합하는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상업등기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582호, 2007. 8. 3., 제정] 제10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등)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교부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으로 본다.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79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및 감면 기간 정비 (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2)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2025. 12. 30., 2025. 12. 3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 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12. 31.>

[본조신설 2015. 12. 29.]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임.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의 재산세 감면은 지역 균형 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감률을 적용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추후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창업기업을 유치하였을 때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0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제안이유

- 세교1지구 은빛개울공원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양질의 주차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은빛개울공원 제1, 2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신설 (안 별표1, 별표2)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세교1지구 은빛개울공원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회 주차요금의 경우 무료시간 이후 매 10분 당 3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동일한 수준임.
- 한편, 집행부는 제1부설주차장의 경우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적용하는 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최초 2시간 무료시간을 적용할 경우 최대 16시간을 무료 운영하게 되어, 유료 운영의 실익이 없다는 오산도시공사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21:00부터 익일 07:00까지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1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만 시간외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복지증진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간외근무 제한 규정 정비 (안 제24조제17항)
 - 육아시간 사용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 생일 특별휴가 신설 (안 제24조제18항)
- 개정 전 생일이 지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간외근무 제한 규정을 행정안전부 예규와 동일하게 정비하는 한편,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2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청

제안이유

-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신규 청사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수정 (안 별표)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신규 청사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3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제안이유

- ‘도-시-안전전세관리단(중개업자)’ 협력을 통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오산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골자

- 오산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1조)
-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4조)
- 관리단 교육, 활동 실적 평가 및 포상,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제17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4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설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제4조)
- 운영시간 및 휴관 (안 제5조)
-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안 제6조·제7조)
- 사용 제한·취소 및 사용자의 의무 (안 제8조·제9조)
-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안 제10조)
-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징수 (안 제11조)
- 센터 운영·관리의 위탁 (안 제12조)

□ 검토의견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서 생활문화시

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장려와 지역의 문화적 가치 고양을 위하여 오산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5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규정 추가 신설 및 단서 조문 개정 (안 제17조)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견폐율 완화 조항의 근거법령 수정 (안 제50조)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중 주민 재열람공고 대상 조항 신설 (안 제50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53조³⁾

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6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
- 단장 임명 절차 및 재해보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 편성을 현행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직 및 운영 체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안 제1조~제6조)
-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기능 강화 (안 제7조)
- 재난 환경 변화에 따른 임무 다각화 (안 제8조)
- 재해보상 체계 법제화 (안 제16조, 별표)

□ 검토의견

-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 사항은 「자연

4)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해임 및 해촉)의 경우, 제1항에서 단장의 해임사유를, 제2항에서 단원의 해촉 사유를 각각 규정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를 단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해임 및 해촉사유에 관하여, 단장과 단원에게 특별히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특히 단원의 경우에 대해서만 타 지자체 전출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크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및 타 지자체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 ----- -----. 1. 2. (제정안과 같음) <u>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u> 4. (제정안 제3호와 같음)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생략)

② -----

-----.

1. ~ 3. (제정안과 같음)

<삭제>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7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 출 자 : 오 산 시 장

제안이유

- 청학도서관 신청사 이전 개청에 따른 도서관 소재지 변경 사항 규정 및 문구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골자

- 청학도서관 소재지 변경 (안 별표)
-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변경 (안 제16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학도서관 신청사 이전 개청에 따른 도서관 소재지 변경 사항 규정 및 문구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